

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

재 결 서

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처분 취소
청구
사 건 번 호 2019-180호
청 구 인 ○○○
피 청 구 인 □□중학교장
재 결 일 자 2020. 1. 20.

주 문

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청 구 취 지

피청구인이 2019. 10. 30. 청구인에 대하여 한 『출석정지 5일』 처분을 취소한다

이 유

I. 사건개요

가. 청구인은 □□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, 피청구인은 위 중학교장으로,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(이하 ‘학폭위’ 라 한다) 심의

결과에 따라 2019. 10. 30. 청구인의 같은 학년 ◇◇◇과 ◆◆◆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학교폭력예방법’이라 한다) 제17조에 의거 「서면사과,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금지, 출석정지 5일,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」 처분을 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.

나. 청구인은 2019. 11. 4.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알고, 이에 불복하여 2019. 11. 8.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.

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.

가. 본 사건들은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로 지속성과 반복성이 전혀 없고,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,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, 제1의3호에 따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격과 거리가 멀다 할 것이다.

나. ◇◇◇ 사안에서는 ‘친구를 그만 갈구라’ 는 충고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해서 피해가 거의 없고, 1학기 초에 ◇◇◇ 학생이 아무 이유 없이 청구인의 목을 조른 후에 사과를 하지 않아 사이가 떨어진 다음에 충고 차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욕을 섞어서 보낸 단순한 문자에 불과하다.

다. ◆◆◆ 사안 관련 2019. 10. 11.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전에 만나

기로 합의된 것이고, ◆◆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온 것임에도 3대1의 대치 상황을 만들어서 ◆◆◆ 학생이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고 피청구인은 사실을 오인하였으며, 청구인은 당시 ◆◆◆ 학생과 몸싸움은 하지 않았고,

2019. 10. 21. 사안은 청구인과 ◆◆◆이 서로 욕설 말싸움을 한 정도이며, 2019. 10. 22. 사안은 교실에서 ◆◆◆ 학생이 먼저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인도 대응한 것뿐으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며, 특히 ◆◆◆ 학생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보복성 협박 문자를 보내서 청구인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,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Ⅲ. 피청구인 주장

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가. ◇◇◇ 사안은 청구인이 ◇◇◇과 BB의 절교를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안에 깊이 관여했고, 청구인도 직접 욕설문자를 보낸 점을 인정하였는바, 이는 언어폭력 및 이에 대한 방조, 조장으로 볼 수 있고, ◆◆◆ 사안에서 ◆◆◆ 학생에게 SNS상으로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며, SNS상에서 청구인이 ◆◆◆ 학생에게 먼저 싸움을 제안하고 AAA, CCC을 데리고 나가서 집단적 위협을 가했고 싸움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 조사 후 2일에 걸쳐 ◆◆◆을 다시 자극해서 싸우며 얼굴을 가격하였는바,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 행위이다.

나. ◆◆◆ 사안에서 SNS 대화 상 청구인은 다수의 욕설을 한 반면, ◆◆◆ 학생은 1회의 욕설을 한 점, 청구인이 먼저 욕설 및 자극을 하며 싸움을 거는데 비하여 ◆◆◆ 학생은 계속 방어적인 점, 청구인과 ◆◆◆ 학생과의 몸싸움은 청구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 원인을 제공한 것인 점, ◆◆◆ 학생의 가해행위는 머리를 잡고 세계 흔든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의 가해행위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점, 청구인이 이 사건 학폭위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◆◆◆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답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청구인의 원인 제공행위와 더불어 가해 정도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다. 특히 ◆◆◆ 학생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보복성 협박 문자를 보낸 행위는 청구인과 ◆◆◆ 학생과의 학교폭력과는 다른 별개의 사안이며, 이 행위와 관련해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별도로 청구인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(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)를 하였다.

IV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
1. 관계법령

가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7조

나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

2. 판 단

가. 인정되는 기초 사실

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‘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’ 고 규정하고 있다.

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보충서면, 피청구인 답변서, 학생확인서, SNS 내역 등 증거자료, 학폭위 회의록,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- 1) 청구인은 2019. 10. 16. AAA, BB과 있으면서 BB이 핸드폰으로 ◇◇◇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다투자, 청구인이 BB 핸드폰으로 ◇◇◇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, AAA도 ◇◇◇에게 욕하는 영상을 찍어 보냈다.
- 2) 청구인은 2019. 10. 10.경 ◆◆◆에게 페이스북에서 욕설을 하고 ‘맞짱을 까자’ 고 한 후, 2019. 10. 11. 밤늦은 시간에 ◆◆◆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나오게 하면서 AAA, CCC을 데리고 나가서 ◆◆◆과 말싸움을 했고, 그곳에서 CCC은 ◆◆◆이 싸웠으며,

위 주차장사안이 학교폭력에 접수되자, 청구인은 2019. 10. 21.

◆◆◆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하고, 2019. 10. 22.에도 ◆◆◆에게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하다가 ◆◆◆과 먼저 청구인 어깨를 밀고 머리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◆◆◆의 얼굴을 쳤다.

나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

- 1)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에 지속성, 반복성이 전혀 없고, ◇◇◇ 사안에서 청구인이 보낸 문자는 친구 간에 흔히 사용하는 욕설을 섞어 보낸 충고성 멘트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고, ◆◆◆ 사안도 지하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합의 후 ◆◆◆이 스스로 나왔다 청구인은 당시 말싸움만 한 것이어서 ◆◆◆이 위협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고, 학교에서 싸운 것도 ◆◆◆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반사적으로 대응한 것이므로 일방적 폭력이 아니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,

◇◇◇ 사안의 경우 청구인은 BB과 ◇◇◇을 절교시킬 목적으로 ◇◇◇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고, 같이 있던 AAA도 같은 이유로 욕설 영상을 보냈던 것인바,

청구인 행위는 단순 친구 간에 주고받는 충고성 문자라고 할 수 없고, AAA의 폭력행위도 방조, 조장한 것으로 보이며, 지속성,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폭력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.(학폭위는 청구인이 ◇◇◇에게 보낸 문자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면서도 가해학생조치별 적용기준에 따라 점수산정을 하면서 지속성은 없음 '0' 점으로 산정하였다.)

또한 ◆◆◆ 사안은 청구인이 SNS상으로 지속적으로 ◆◆◆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지만 ◆◆◆은 계속 방어적 입장이었고, 청구인이 먼저 ‘싸우자’고 하며 ◆◆◆을 밤늦은 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부르고 그곳으로 AAA, CCC을 데리고 나가서 말싸움을 했고, CCC과 ◆◆◆ 간에 싸움을 조장하였으며,

이후 지하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자, 청구인은 ◆◆◆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하고, ◆◆◆이 먼저 청구인 어깨를 밀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가해행위를 하자 주먹으로 ◆◆◆의 얼굴을 가격한 것인바, 이는 청구인이 ◆◆◆을 자극하여 가해행위를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되고, 청구인이 ◆◆◆에게 한 그러한 행동들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.(학폭위는 청구인이 ◆◆◆에게 한 행위들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지속성은 ‘낮음’ 1점으로 산정했다.)

2)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,

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의 ◇◇◇, ◆◆◆에게 한 행위를 각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, 가해학생조치별 적용기준에 따라 점수산정을 하며,

◇◇◇ 사안은 심각성 1점, 지속성 0점, 고의성 1점, 반성정도 2점, 화해정도 3점 총 7점으로, ◆◆◆ 사안은 심각성 3점, 지속성 1점, 고의성 2점, 반성정도 1점, 화해정도 3점 총 10점으로 각 산정하였는바, 청구인이 학폭위에서 잘못된 것 같다고

는 말하지만 진정한 반성태도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해학생들과 화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점수산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,

학폭위에서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◇◇◇에 대한 사안과 ◆◆◆에 대한 사안을 병합해서 출석정지 5일 등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, 위 결정에는 재량권 일탈, 남용의 위법함이 없는 바, 피청구인은 위 학폭위 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,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V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,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